

#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치료와 보호 위주의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와 보호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관한 복지정책이 장애인복지영역의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행정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외되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이 배제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